

●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-94호

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제28차 회의를 통하여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2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

1. 대상: 5개 사업자

번호	대상자	등록/신고번호	생년월일/법인등록번호	주소	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사실	적용 법령	과태료 금액(원)
1	15퀵코스모스	제757호	1952.5.25.	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50길 12-1(신계동) (이하생략)	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위반	위치정보법 제36조제3항	3,000,000
2	(주)큐택코리아	제331호	170111-0356099	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(이하생략)	이용약관항목 명시 의무 위반	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	1,500,000
3	(주)편플웍스	제590호	110111-4951417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78번길 1 (이하생략)	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위반	위치정보법 제36조제3항	3,000,000
4	주식회사 대한민국맛집	제745호	180111-0677302	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, (이하생략)	폐업신고 위반	위치정보법 제11조제2항	3,000,000
5	(주)판개이솔루션	제574호 (폐업)	160111-0286983	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4 (이하생략)	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위반	위치정보법 제36조제3항	3,000,000

2. 근거법령
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·폐업), 18조(개인 위치정보의 수집), 제36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, 제43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3.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

- 납부방법 : 우리 위원회 안내에 따른 고지서 납부(02-2110-1371)
※ 수납기관(은행, 인터넷지로, 국고금계좌 등)
- 납부기한 : 2024. 8. 30.

4. 게재(게시)기간 : 2024. 8. 2. ~ 8. 16.(14일)

5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이의제기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2동 222호

(☎ 02-2110-1525, 팩스 : 02-2110-0157 / E-mail : location@korea.kr)

6.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3%의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고,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 또한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, 제54조에 따른 감치,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